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수신 재단법인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경유)

제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원의 공고 제2021-29호(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및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서 고용노동부 본부에 구두 질의한 민원 관련 내용입니다.
3. 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한바, 귀 원에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A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B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하 "C노조") 등 다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이 중 A노조는 귀 원과 업무위탁 협약을 맺기 전인 2020.12.24.자로 (재)광주복지재단(이전 업무위탁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2020.12.30.자로 귀 원과 A노조가 '기존 종사자의 고용과 단체협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B노조와 C노조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됩니다.
3. 따라서 현재 귀 원은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A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지만, B노조, C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4.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은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5. 또한 위 시행령 제14조의2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도록 규정돼 있는바, 이는 "사업장에 A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이 있지만 B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이 없는 상황에서 B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따라서 B노조와 C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이미 존재하는 단체협약(A노조와 사용자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2022.12.23.)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62-975-6307(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감독관 이재훈)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감독관	이재훈	팀장	정호태	과장	김용현	전결 2021. 2. 17.
협조자						
시행	노사상생지원과-690	(2021. 2. 17.)		접수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오룡동 1110-13 정 부광주지방합동청사), 4층 노사상생지원과					/ http://www.moel.go.kr/gwangju
전화번호	062-975-6307	팩스번호	062-975-6329	/ Ledzeppelin@korea.kr	/ 비공개(5,6)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